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42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서지영·서천호·김선교

이헌승 · 성일종 · 김소희

김대식 • 이인선 • 박수영

최은석 · 김승수 · 곽규택

송언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 직을 좀 더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외국대학의 우수인재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·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) ①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 ·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9조의3(외국대학 겸직에 관한
	특례) ① 외국대학의 교원으로
	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
	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
	따른 교수·부교수 및 조교수
	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
	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
	<u>직할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
	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
	채용분야 및 절차 등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